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수처 인력 증원 등 〉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4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수처 기소권 범위를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	2
2. 공수처 검사, 수사관 및 행정직원 정원 확대 등	7
3. 공수처 검사 임기 및 연임제한 폐지, 적격심사 신설	12
4.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는 등 독립성 강화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현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Ⅲ. 검토의견

1. 공수처 기소권 범위를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 제3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공수처의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하여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1항,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 ----- <u>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u> ----- ----- -----.
1. <u>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u>	1.~2. <삭 제>
2. <u>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u>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검사는 <u>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u>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③ (생략)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u>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 <u>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나. 검토의견

현행 공수처법 제3조제1항1)은 수사권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 및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관련범죄²⁾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기소권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경무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제기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형사절차에서의 정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³⁾ ②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독립된 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권을 한정한 것으로 보임.⁴⁾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및 헌법기관(헌법재판소·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 소속의 고위공직자와 관련범죄를 행한 민간인에 대하여 기소권을 갖게 됨.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3.4, p.27.

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토보고」, 2019. 6, p.47.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 대상의 비교>

구 분			현행		개정안	
			수사권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
고위 공직자 (가족 포함)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	
	수사기관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입법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x	○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정브리핑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장성급 장교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법부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정무직공무원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감사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관련범죄를 저지른 민간인 (공동정범·종범·교사범, 뇌물공여, 범인은닉, 국회위증 등)			○	x	○	○

공수처의 기소권 확대는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수사의 효율성 제고 측면이 있으나,⁵⁾ 현행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사권력간 견제와 균형 취지를 반영⁶⁾한 것이라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종국적인 판단권한을 갖지 못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범죄를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실상 검찰 견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5) 2017년 10월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자체방안’에서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권한을 모두 갖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부패척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었음.(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방안 제시’, 2017년 10월 15일)

6) 2020. 2. 4. 및 2022. 5. 9. 두 차례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는 등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수정한바 있음.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립하면서 판사·검사 등의 일부 범죄에 한정하여 기소권을 부여한 것인데, 기소범위를 수사범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이라는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공수처 검사, 수사관 및 행정직원 정원 확대 등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검사(제4조 및 제8조제2항), 40명 이내의 수사관(제10조제2항)으로 구성됨.⁷⁾

개정안은 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행정직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각각 확대하여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및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략)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u>25명</u> 이내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50명</u>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략)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u>40명</u>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60명</u> ----- -- . -----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u>수사처</u>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0명</u> 이내로 한다.	----- -----.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u>공수처</u>의 ----- -----. ② ----- <u>40명</u> -----.
---	--

나. 검토의견

현재 공수처 인원은 85명임. 참고로 검찰 정원은 10,650명(검사 : 2,292, 일반직 : 8,358)⁸⁾이며, 경찰 정원은 131,046명⁹⁾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수는 약 7,100명, 이 중 기소대상자는 약 5,600명으로 각각 추산되고,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후 약 4년간 접수된 총 사건 수는 10,445건(2025. 5. 31. 기준)임.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는 범죄를 범한 고위공직자의 수사관여 가능성이 타 범죄에 비해 높아 수사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인력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직원의 경우 ① 타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검사정원 대비 검사의 인력 정원이 부족한 점, ②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예산·인사업무 등

8) 법무부, 「2025년 법무연감」, 2025

9) 경찰청, 「2023년 경찰통계연보」, 2024

기본적 행정인력 소요가 존재한다는 점, ③ 현재 인력 부족으로 행정직원 정원(20명)보다 많은 수의 파견공무원(21명, 2025. 5. 31. 기준)이 공수처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 행정직원의 증원 필요성은 계속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공수처와 검찰청의 검사 정원 대비 검사의 정원 비율 비교>

기관*	검사정원	검사의인력 정원	검사대비 검사의 인력 비율
대검찰청	68명	534명	7.85배
서울중앙지검	267명	870명	3.25배
대전지검	73명	221명	3.02배
부산지검	84명	303명	3.6배
광주지검	74명	249명	3.36배
강릉지청	11명	53명	4.81배
검찰청 전체	2292명	8391명	3.66배
공수처	25명	60명**	2.4배

* 지검 및 지청 자료는 일부만 무작위 기재하였음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자료: 2024년 검찰연감

<공수처 중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2025. 5. 31. 기준)>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연구사)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지자체6)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소속직원(행정5)
	과 사무	소속직원(공무직)
회계	회계·계약(지출관)	파견(지자체5)
	급여·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조직	직제·조직진단	소속직원(행정6)
정보화	정보화 총괄	파견(전산6)
	KICS 총괄	소속직원(전산6)

*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공수처는 출범 4년차로 업무모델을 우선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공수처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¹⁰⁾ 수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인건비 집행 역시 부진하므로, 정원 미달 인원 충원 및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 공무원 정원 증원 시 예산상의 조치가 반드시 병행¹¹⁾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증원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인력운용 현황, 타 수사기관 대비 1인당 업무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10)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25. 5.) 기준 검사의 현원은 20명으로 총 5명의 결원이 있고, 수사관의 현원은 38명으로 총 2명의 결원이 있음.

11) 「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수사 및 행정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원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신분 보장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공수처법 제정 이후 수사대상과 대상 범죄의 변동이 없고, 그 외에도 공수처 인원을 증원하거나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수처 출범 후 줄곧 공수처 검사의 현원이 공수처법 제정 당시에 규정한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공수처 검사 임기·연임제한 폐지, 적격심사 신설

가.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여 최대 9년까지로 연임을 제한하였음.

개정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는 임기 없이 정년까지 채용하도록 하고, 연임제한을 폐지하되, 다만, 인사위원회를 통해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및 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②(생략)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년----- ----- -----.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 ----- ----- 전보, 적격심사, ----- ----- -----.
<신설>	제14조의2(수사처검사 적격심사)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 검사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수사처검사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수사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처장에게 그 수사처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처 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처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나. 검토의견

공수처법 제8조¹²⁾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임. 그런데 공수처 최초 출범 당시 검사로 임용되었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 전 퇴직하였고,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연임하여 연임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검사 20명(처장 및 차장 제외)의 재직기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재직자 수는 4명이고, 2년 이상 재직자 수도 도합 3명으로 공수처 출범(2021년 1월 21일) 후 약 4년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중 3년 이상 재직자 비율은 22.2% 정도로 나타났다.

<수사처검사의 재직기간별 인원수>

(단위: 명, 5월말 기준)

구분	0 ~ 1년	1 ~ 2년	2 ~ 3년	3년 이상	합계
검사*	7	4	3	4	18

* 처·차장 제외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수사처검사의 채용·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검사*	채용인원	21	3	10	1	6	41
	퇴직인원	0	5	7	11	0	23

* 처·차장 제외

이와 같이 검사의 퇴직률이 높을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어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조직 운영을 불안정하게 함.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 제한과 연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 저해와 전문성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음.¹³⁾¹⁴⁾

이에 개정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 및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검사의 신분이 안정되고 공수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한을 둔 취지는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권력유착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로 보이는바,¹⁵⁾ 2020년 공수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13) 뉴시스,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 연임 좌절…‘신분불안’”, 2024. 2. 2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0_0002632636&cID=10201&pID=10200

14) 검찰청 검사는 7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받고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임명 가능함. 또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의 경우에도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법정된 자격요건 또한 없음.

15)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방안 제시’, 2017년 10월 15일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업무의 연속성 보장 및 우수인력 유치, 수사의 연속성·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검사 임기 및 연임제한의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공수처법이 3년의 임기제를 도입했다는 점, 제도 도입 이후 공수처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는 등 독립성 강화

가.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수처를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제17조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 ② (생략) <u>④ 수사처는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u>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⑤ (생략) <u>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u>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나. 검토의견

공수처법 제3조¹⁶⁾는 고도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안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수처를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을 명시할 경우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공수처법 제17조제6항¹⁷⁾은 예산과 관련하여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¹⁸⁾에 따른 중앙관서로 규정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음.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¹⁹⁾함. 독립기관은 예산 편성 시 해당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독립기관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18)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9)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독립성을 높게 보장²⁰⁾하고 있음.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으로 명시할 경우 공수처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시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공수처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예산과 관련한 공수처의 독립성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사한 수준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의 독립기관은 헌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이 해당 기관에 준하는 수준인지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의 최초 입법 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당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서는 ‘수사처의 예산회계 처리에 대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구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를 직무상 독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후 제정된 공수처법 제17조제6항은 처장이 공수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공수처의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시 입법자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임.²¹⁾

20)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 도입을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예산상 독립기관성을 부여하지 않은 정책으로 공수처 수사의 효율성, 중립성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예산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의 독립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준하는 예산상 자율성을 부여받은 기관으로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있고, 공수처와 유사하게 법률로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인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바, 개정안 논의 시 해당 입법례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21) “당초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는 ‘수사처의 예산회계 처리에 대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구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를 직무상 독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17조 제6항은 위 권고안과 달리 수사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사처의 예산상 독립성을 부정하였다.” - 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등

<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과 관련한 기존 입법례 >

구 분	관련 조문
감사원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안에 대하여 공수처는 공수처가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공직사회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므로 동의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은 통상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고, 20대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의 독립기관이 아닌 제2항의 중앙관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3